

국공립 어린이집 8개소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구립 꼬꼬마라인, 구립 밤비, 구립 코알라야가마을, 구립 큰별, 구립 아기별,
은초록, 즐거운, 은도어린이집]

심사보고서

2021년 10월 13일

미래·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2021년 9월 29일

나. 제출자: 강서구청장

다. 회부일자: 2021년 9월 30일

라. 상정일자: 제282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미래·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 상정·의결(2021.10.13.)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 김의진 가족정책과장)

가. 제안이유

국공립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운영체 중 위탁기간이 만료거나 사전 종료¹⁾되는 8개소 어린이집에 대한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부칙 제3조에 따라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1) 은도어린이집: 당초 위탁기간은 2023.12.31.까지이나 수탁체에서 수탁 사전종료 의사를 밝혀 2021.12.31.자로 위탁을 종료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1) 사업개요

○ 시설개요

어린이집명	행정동	소재지	면적 (㎡)	정원 (명)	위탁체	위탁기간
구립 꼬꼬마라인	등촌1동	화곡로68길33, 102동 101호 (등촌동, 등촌라인)	92	20	개인(백혜준)	~22.02.28.
구립 밤비	등촌1동	공항대로45길 68-6, 106동 104호 (등촌동, 등촌서광마을아파트)	94	20	개인(백성란)	~22.02.28.
구립 코알라 아가마을	가양3동	허준로175, 608동 101호 (가양동, 가양6단지아파트)	70	16	개인(최신희)	~22.02.28.
구립 큰별	등촌3동	화곡로63가길71, 1005동 106호 (등촌동, 주공10단지아파트)	85	15	개인(오영이)	~22.02.28.
구립 아기별	우장산동	강서로348, 108동 101호 (내발산동, 우장산현대홈타운아파트)	86	20	개인(박금안)	~22.02.28.
은초록	등촌3동	공 항 대 로 39 길 59	545	104	사회복지법인 유니월드	~22.04.30.
즐거운	가양2동	양 천 로 57 길 36 도 시 개 발 아 파 트 5 단 지	435	121	사회복지법인 한기장복지재단	~22.04.30.
은도	화곡1동	화 곡 로 26 길 33	392	84	사회복지법인 서울블루사회복지회	~23.12.31.

○ 위탁사무내용

- 어린이집 관리,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보육 운영계획 수립 및 평가
- 영유아 보호와 교육, 예산계획 및 집행, 보육교직원 임용 및 전문성 증진을 위한 교육
- 부모교육 및 가정과 지역사회간의 연계 및 교류

○ 위탁기간: 5년²⁾

○ 수탁자 선정방식: 심의자료 접수 후 강서구 보육정책위원회 심의 선정

○ 소요예산: 2,092,302천원(2022년 기준)³⁾

2) 구립 꼬꼬마라인, 구립 밤비, 구립 코알라아가마을, 구립 큰별, 구립 아기별어린이집: 2022. 3. 1. ~ 2027. 2. 28.

은초록, 즐거운어린이집: 2022. 5. 1. ~ 2027. 4. 30, 은도어린이집: 2022.01.01. ~ 2026.12.31.

3) 구립 꼬꼬마라인어린이집: 225,024천원, 구립 밤비어린이집: 225,166천원, 구립 코알라아가마을어린이집: 196,646천원, 구립 큰별어린이집: 167,993천원, 구립 아기별어린이집: 196,789천원, 은초록어린이집: 388,737천원, 즐거운어린이집:

2) 추진일정

- 2021년 9월: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체 선정계획 수립
- 2021년 11월: 구립 꼬꼬마라인어린이집 등 6개 어린이집⁴⁾

위탁심사 및 협약체결

- 2022년 1월~2월: 은초록어린이집 등 2개 어린이집⁵⁾

위탁심사 및 협약체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 「영유아보육법」 제24조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의2
- 「서울특별시 강서구 보육 조례」 제27조, 제29조
-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 제10조, 부칙 제3조

4. 전문위원 검토의견

(전문위원: 허은옥)

- 본 동의안은 구립어린이집 8개소의 위탁기간이 만료 및 사전종료됨에 따라 재위탁을 추진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부칙 제3조에 따라 의회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것으로,

379,440천원, 은도어린이집: 312,507천원

4) 구립 꼬꼬마라인, 구립 밤비, 구립 코알라아가마을, 구립 큰별, 구립 아기별어린이집, 은도어린이집

5) 은초록, 즐거운어린이집

- 어린이집 운영사무는 「영유아보육법」 제24조,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민간위탁이 가능한 사무이며, 주관부서에서 민간위탁방식이 경제적 효율성,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활용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하여 재위탁 및 변경 위탁하고자 하는 것임.
- 민간위탁 대상시설 중 재위탁은 7곳, 변경위탁은 1곳으로(※위탁 용어의 정의 참조), 구립 꼬꼬마라인어린이집 외 4개 어린이집은 올해 11월, 은초록어린이집 외 1개 어린이집은 내년 1월에 보육정책위원회 심사를 통해 재위탁을 진행할 예정이며, 은도어린이집은 위탁이 올해 12월에 사전 종료되어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올해 11월에 변경위탁에 대한 심사를 진행할 예정임

<위탁 용어의 정의>

- 신규위탁: 어린이집 최초의 공개경쟁으로 선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 재 위 탁: 위탁기간이 만료되어 계약기간을 갱신함에 있어 위탁기간 만료전의 수탁자에게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사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를 말한다.
- 변경위탁: 재위탁 심사에서 부적격 및 재위탁 대상자가 없거나, 재위탁하지 않고 수탁자를 새로 공개경쟁으로 선정하는 경우를 말한다.(기존 수탁자도 공개경쟁 참여 가능)

- 보건복지부, 2021년 보육사업안내 p20

- 검토결과, 어린이집 운영은 인적·물적 자원의 전문성과 다양한 운영 경험이 필요한 만큼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의2(국공립 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0조(수탁기관의 선정기준) 등에 따라 민간에게 위탁 운영하는 방안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 수탁자에 대한 민간위탁 심의 시 어린이집 운영 실적, 원장의 전문성, 향후 운영계획 등 재위탁이 적절한지 면밀히 심사하고 향후 철저한 지도·감독으로 양질의 보육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5.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6. 토론요지: 생략

7. 심사결과: 원안가결

붙임 관계법령 1부.

□ 「영유아보육법」

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①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운영기준에 따라 어린이집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국공립어린이집을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초 위탁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에 따라 심의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른다.

1. 민간어린이집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여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경우 기부채납 전에 그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한 자
2.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시 해당 부지 또는 건물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자
3. 「주택법」에 따라 설치된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경우 전환하기 전에 그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한 자

③ 제14조에 따라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한 사업주는 이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어린이집 위탁 및 위탁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의2(국공립 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 법 제2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은 별표 8의2와 같다.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제24조의2 관련)

1. 일반기준

가. 공개경쟁을 통해 최초로 선정하여 신규 위탁하는 경우 개원 예정일 6개월 전까지 선정한다.

나. 위탁과 관련한 모든 절차, 방법 및 심의 결과는 공개한다. 이 경우 위탁을 하는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활용할 수 있다.

다. 위탁기간은 어린이집의 일관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5년으로 한다. 다만, 원장의 잔여 임기가 5년 미만인 경우 등 조례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위탁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4. 그 밖에 공고, 위탁계약 등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공립어린이집의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고, 공립어린이집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서울특별시 강서구 보육 조례」

제27조(위탁운영) ① 구청장은 시설을 직접운영하거나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초 위탁은 법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른다.

② 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신청자 중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운영자(이하“수탁자”라 한다)로 선정한다.

③ 시설의 위탁에 있어 수탁자의 선정기준 및 공개모집에 관한 내용·방법·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9조(위탁기간) ① 시설의 위탁기간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의2에 따라 5년으로 한다.

- ② 시설의 재위탁은 한 차례만 한다. 다만, 기부채납 또는 무상임대 등의 방법으로 토지 또는 건물을 지원한 단체, 개인의 경우 최초 위탁하고 협약 기간에 한정하여 재위탁 할 수 있다.
- ③ 시설의 재위탁 기간 만료 후 위탁방법은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른다.

□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여성·청소년·아동·가족 복지를 위한 시설 운영 및 관련 사무

제10조(수탁기관의 선정기준) 구청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 1.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기구·장비·시설 및 기술 보유 정도
- 2. 재정 부담능력 및 책임능력, 공신력
- 3. 위탁사무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 여부 및 사무처리 실적 등
- 4. 수탁기관의 기능과 업무의 연관성
- 5. 사업운영의 투명성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

부칙 제3조(승인 및 동의 절차의 특례)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은 자치 사무의 경우 제7조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조례 공포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